

# 독일의 학교 및 대학스포츠 - 현실과 법\*

Klaus Vieweg\*\*

번역: 임정숙\*\*\*

---

## <차 례>

- |                 |        |
|-----------------|--------|
| I. 서론           | IV. 책임 |
| II. 독일의 스포츠 조직  | V. 요약  |
| III. 학교 및 대학스포츠 |        |
- 

### <국문초록>

독일의 스포츠 조직은 중앙으로 일원화된 단일스포츠체제로서 피라미드 구조와 사법상의 조직 형태로서 독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 협회 및 단체설립에 대한 자율성은 결사.동맹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헌법 제9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국가는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으로 나뉘어 스포츠 단체에 대해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각 단체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엘리트 스포츠학교 등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최근 수십 년간 독일스포츠는 프로화, 상업화, 대중매체화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러 다양한 운동종목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기 때문에 학교 및 대학스포츠에 대한 구상은 헌법상 권한으로서 각개의 연방주의 권한에서 출발한다.

청소년을 위한 학교스포츠는 독일 국민들의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역량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스포츠 수업은 독일스포츠연맹(DOSB)이 요구하고 있는 주당 3시간의 수업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경쟁스포츠의 달성에는 커다란 무리가 따른다. 특화된 엘리트스포츠학교 혹은 스포츠 대회 등을 통한 지원은 이러한 취약점의 보완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독일스포츠후원재단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들에게는 „스포츠후원 선서(Sporthilfe-Eid)“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기준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독일의 모든 대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광범위한 스포츠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마

---

\* 본 논문은 2013년 10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1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심화시킨 것임.

\*\* 독일 Erlangen 대학교, 교수

\*\*\*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법학박사

련하고 있다. 시합에 참가할 정도의 스포츠 능력을 갖춘 학생은 누구든지 독일 대학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독일의 대학스포츠는 프로화 되어 있지는 않다. 대학스포츠는 독일스포츠연맹에 의해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스포츠나 연방군과 연방경찰에 의한 우수육상선수 지원프로그램 등과 비교한다면 그 역할은 부차적인 조역에 불과하다. 독일대학스포츠와 관련하여 가장 환영할 만한 장점은 일부 대학들이 스포츠협회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스포츠와 학과 공부를 동시에 실현해 낼 수 있는 이중경력(duale Karriere)시스템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엘리트 선수들은 스포츠와 전공의 이중 경력을 겸비하게 되고, 미래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스포츠 분야의 특수한 테마로서 스포츠 당사자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는데, 독일의 운동선수, 트레이너, 학교 및 대학교 체육교원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모두 일반책임법인 민법의 지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가장 특이한 점은 첫째로 의무화된 위에 방금 거론한 스포츠 당사자들에 대한 법정상해보험에의 가입이며 둘째로는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평화로운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해 스포츠 당사자들의 책임의 부담을 고의의 경우로 철저히 제한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 1. 서론

라틴어의 *citius altius fortius*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과원칙을 의미하며, 이는 공평의 원칙과 더불어 또 하나의 스포츠의 주요 원칙을 이룬다. 능력비교 즉, 경쟁의식을 통해 스포츠가 신장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상업화된 스포츠 미디어의 시장가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스포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과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운동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수영이나 체조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포츠는 특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매개로 국제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청소년과 대학스포츠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인스 브루크의 겨울 청소년 올림픽 게임, 2014년 난징에서의 2차 하계 청소년 올림픽 게임, U-17, U-20 세계축구선수권대회 그리고 2015년 한국의 광주에서 개최될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언급 하고 싶다. 1972년 이래로 국제 학교 스포츠 연맹 (ISF:International School Sport Federation )이 주최하는 학교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다.<sup>1)</sup> 유럽 축구 협회

1) Vgl. hierzu <http://isfsports.org/insideisf/about-isf> (letzter Abruf am 06.11.2013).

인 UEFA는 청소년 리그로서 새로 신설된 것이며, 더욱이 동 리그에 대한 방영권이 유럽의 대표적인 스포츠채널인 유럽스포츠에 방영권이 부여됐다.<sup>2)</sup> 동 청소년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동하는 클럽내의 U-19 팀을 말한다.

학교 및 대학 스포츠의 국제 비교는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장 선생님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과 미국과의 흡사한 점도 잘 설명해 주었다. 이제 나는 독일의 스포츠 조직에 대해 간략하게 그 개요를 먼저 설명한 다음, 이어서 독일의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 독일의 스포츠 조직

독일의 스포츠 조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

- 피라미드 구조 및 사법상 조직형태인 한 자리 원칙(Ein-Platz-Prinzip)(하나의 스포츠연맹/한 종류의 스포츠)
- 결사·동맹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 (기본법 제9조: Art. 9 GG ).
-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 하에서의 지원자 역할(국가적 지원).
- 일부 스포츠종류의 프로화, 상업화 및 대중매체화 (예: 축구, 농구, 아이스 하키, 핸드볼, 배구).<sup>3)</sup>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앙으로 일원화된 단일 스포츠체제는 제3제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히틀러 집권 초기(1933)에 이미 “획일화”라는 구호 하에 만들어 진 것이다.<sup>4)</sup> 이러한 스포츠체제는 독일스포츠연맹(DSB: Deutscher Sportbund)의 창립해인 1950년까지 계속 되었다.

독일스포츠연맹(DSB)은 2006년 독일 국가올림픽위원회(NOK)와 합병하여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이 되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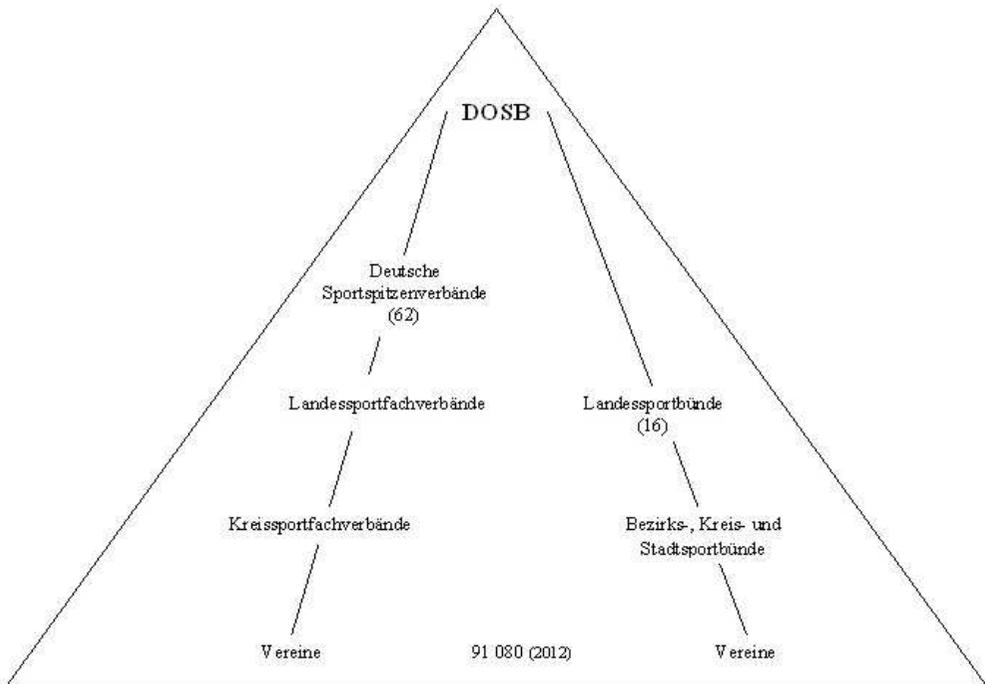
2) Sieh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vom 17.09.2013, S. 29.

3) Als Überblick hierzu siehe Vieweg, Faszination Sportrecht, <http://www.irut.de/Forschung/Veroeffentlichungen/OnlineVersionFaszinationSportrecht/FaszinationSportrecht.pdf> (letzter Abruf am 12.11.2013).

4) Hierzu im Einzelnen Vieweg, Gleichschaltung und Führerprinzip, in: Salje (Hrsg.), Recht und Unrecht im Dritten reich, Münster 1985, S. 244 ff.

5) Hierzu Summerer, in: Fritzweiler/Pfister/Summerer (Hrsg.), Praxishandbuch Sportrecht, 2. Auflage,

DOSB 조직도는 피라미드구조로 특징 지워진다.<sup>6)</sup>



위의 조직도에서 연방단체와 지방단체로 구분된 연방국가의 특성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독일민법 제 21조 이하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의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기본법 제9조(Art. 9 GG)의 결사·동맹의 자유는 단체 및 협회에게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이를 자기 단체/협회 또는 회원들에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예: 처벌, 트레이너 라이선스, 리그 운영조직)<sup>7)</sup>

국가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국가는 단체내부에서의 갈등해결을 위해, 법률상의

München 2007, I 2 Rn. 27 f.; zum Deutschen Olympischen Sportbund (DOSB) siehe <http://www.dosb.de/de/organisation/philosophie/kurzportraet-des-dosb/> (letzter Abruf am 06.11.2013).

6) Das detaillierte Organigramm des DOSB ist abrufbar unter <http://www.dosb.de/de/medien/downloads/dosb-organisation/organigramme/> (letzter Abruf am 20.11.2013).

7) Vgl. Maunz/Dürig-Scholz, Kommentar zum GG, Art. 9, Rn. 68; Vieweg, Normsetzung und -anwendung deutscher und internationaler Verbände, Berlin 1990, S. 143 ff.

권리보호를 보장한다. 특히 국가는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자역할도 한다.<sup>8)</sup> 따라서 국가는 경쟁 및 엘리트스포츠(Leistungs-/Spitzensport)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한편으로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연구와 연계되는데, 그 연구는 응용 교육훈련학 연구소 (IAT), 스포츠 장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소 (FES), 스포츠학을 위한 연방 연구소 (BISp), 국립 안티 도핑기구 (NADA)의 도핑극복을 위한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 진다. 또 다른 측면으로 특히 육상선수들은 연방군이나 연방경찰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을 얻는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통해 지원된다(대체로 프로 선수).

최근 수십 년 동안 스포츠는 프로화, 상업화, 대중매체화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축구를 들 수 있는데 독일축구리그는 올해로 50 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이스 하키, 농구, 핸드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 협회와 프로 리그 간의 책임분담은 소위 협약에 의해 이루어 진다 (예: 독일 축구 협회와 독일 축구 리그 사이의 협약). 그러나 모든 협회들이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인 것은 아니다. 1971년에 올림픽헌장에서 아마추어의 개념이 폐지된 이후 스포츠의 프로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sup>9)</sup> 아마추어개념은 이제 독일에서는 단지 법정상해보험을 위한 하나의 주변적 의미 (Randbedeutung)에 불과할 뿐이다.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한도(아마추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0유로이다.<sup>10)</sup> 축구에 있어서는 FIFA의 스포츠선수에 대한 이적규정이 표준적 잣대이다. 동 규정은 독일축구협회와 독일 축구 리그에 의해 서로 다르게 도입되었다(§ 8 SpielO DFB - Status der Fußballspieler - : 250€; Präambel LOS DFL 150 €). 프로스포츠에서 도핑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아마추어의 기준은 다시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바덴 뷔르템베르크의 제안 ).<sup>11)</sup>

### 3. 학교 및 대학스포츠

8) Siehe hierzu insbesondere die Internetpräsenz des für den Sport auf Bundesebene zuständigen Bundesministeriums des Inneren, [http://www.bmi.bund.de/DE/Themen/Sport/Sportfoerderung/sportfoerderung\\_node.html](http://www.bmi.bund.de/DE/Themen/Sport/Sportfoerderung/sportfoerderung_node.html) (letzter Abruf am 12.11.2013), sowie beispielhaft die des Bayerischen Staatsministeriums für Unterricht und Kultus auf Länderebene, <http://www.km.bayern.de/ministerium/sport.html>, (letzter Abruf am 12.11.2013).

9) Vgl. zur Entwicklung des Amateurstatus Fritzweiler, in: Fritzweiler/Pfister/Summerer (Hrsg.), Praxishandbuch Sportrecht, 2. Auflage, München 2007, III Rn. 2 f.

10) [http://www.vbg.de/DE/2\\_Versicherungsschutz\\_und\\_Leistungen/1\\_Wer\\_ist\\_versichert/1\\_Bezahlte\\_Sportler/Bezahlte\\_Sportler\\_node.html](http://www.vbg.de/DE/2_Versicherungsschutz_und_Leistungen/1_Wer_ist_versichert/1_Bezahlte_Sportler/Bezahlte_Sportler_node.html) (letzter Abruf am 20.11.2013).

11)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vom 12.04.2013, S. 29.

학교 및 대학스포츠에 대한 구상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헌법상 규정에 따라 연방 각주의 권한에서 출발한다.

### 가. 학교스포츠

학교스포츠의 현실은 독일올림픽스포츠연방(DOSB)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당 3시간의 체육수업조차도 거의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시간안배로는 경쟁스포츠의 달성이 불가능하며,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자발적인 활동그룹과 학교체육시합과 같은 제도가 있다.

- 1951년 이래로 독일연방청소년게임이 연방대통령 주최로 의무적으로 개최된다.<sup>12)</sup>
- 올림픽을 위한 청소년교육은<sup>13)</sup> 슈테른 잡지에서 주관하여 동 잡지의 편집자이자 발행인인 H. Nannen과 DSB의장인 W. Daume 그리고 연방문화체육부장관회의에 의해 1969년부터 시작되었다. "재능훈련교육"과 관계 있는 이러한 행사의 목표는 미래의 올림픽우승자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올림픽 청소년 훈련교육을 위해 약 800,000명의 청소년들이 세계 최대의 학교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데, 동 대회는 16개 연방문화체육부장, DOSB, 독일의 학교스포츠재단 하의 16개 스포츠협회에 의해 공동으로 계획되고, 시행된다. 대부분의 스포츠종목에 대한 결승전은 수도 베를린에서 개최되며, 후원자는 독일연방대통령이다. 2010년이래 청소년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훈련이 존재한다.

이렇게 시합을 통해 스포츠경쟁의식을 지원하는 대중적인 지원방법 외에도 엘리트선수를 개발하기 위한 학교스포츠 모델들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모델중의 하나로서 우선 10세에서18세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 엘리트스포츠학교를 들 수 있다(예: 베르히테스가덴(Berchtesgaden)에 위치한 재능 있는 청소년선수들을 모아놓은, 기숙사와 산악훈련시설을 갖춘 스키기숙사학교).

1990년대 초부터 DSB / DOSB에 의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스포츠엘리트 학교<sup>14)</sup>들

12) Allgemein zu den Bundesjugendspielen siehe <http://www.bundesjugendspiele.de/> (letzter Abruf am 06.11.2013).

13) Vgl. hierzu [http://www.jtfo.de/daten\\_und\\_fakten/](http://www.jtfo.de/daten_und_fakten/) (letzter Abruf am 06.11.2013).

14) 엘리트 스포츠학교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위하여:<http://www.dosb.de/de/eliteschule-des-sports/>

이 표창을 받고 있다. 수상 조건은 다음의 여섯 가지 기능 및 소질기준에 대한 성취도 이다<sup>15)</sup>:

(1) 스포츠 훈련을 위한 조건 (2) 시간의 조율과 관리 (3) 지역적 및 전국구적 활동 가능성, (4)의사결정구조 및 조직구조 (5) 엘리트선수 육성의 관점상 교육전체적 구상, (6)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스포츠와 교육적 성과.

현재 약105개의 다양한 종류(예: 김나지엔, 게잠트슐레,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등)의 41개의 엘리트 스포츠 학교가 있다.<sup>16)</sup> 엘리트 스포츠 학교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으며, 19개의 올림픽 훈련 센터 중, 그 어느 하나에 연결되어 있다. 선수들의 입학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이미 주 또는 연방선수단의 멤버 이거나 연방주협회의 제안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지원단체나 후원자(특히 저축 은행 금융 그룹)가 비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뉘른베르크의 경우, 900 유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학생의 부모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한가지 예로서 바이엘 04 레버쿠젠 축구 유한회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sup>17)</sup> 동 레버쿠젠은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LG가 동 축구클럽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곳은 추구하는 교육노선이 아주 흥미롭다. 레버쿠젠은 프로축구선수의 양성을 위해 3년 만기의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바이엘 04 레버쿠젠 회사의 의무로는 공명정대한 체육인의 양성, 의료적 지원, 교육적 지원, 교육 및 성격 개발 / 자기 계발 등을 들 수 있다. 선수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클럽에 대한 책임 및 의무의식(공평무사, 품행방정)(클럽의 훌륭한 대표자; 트레이너와 코치, 동료와 상대선수에 대한 존중과" 페어 플레이 "; 동료선수에 대한 책임 및 의무의식; 정당한 성과 지향적 행동 "(음식, 여가, 라이프 스타일, 운동 중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프로다운 자세, 도핑 및 약물 금지 등); 대중 앞에서 적절한 행동. 클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어서 계약선수 당사자인 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함께 바이엘 04측에서는 선수학생에게 월 € 250이상의 급여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급여의 지급은 학생들이 상해보험조합의 법정상해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미가

(letzter Abruf am 06.11.2013).

15) Vgl. <http://www.dosb.de/de/eliteschule-des-sports/hintergrund/qualitaetskriterien/> (letzter Abruf am 06.11.2013).

16) Siehe unter <http://www.dosb.de/de/eliteschule-des-sports/hintergrund/daten-zahlen-fakten/> (letzter Abruf am 06.11.2013).

17) 이에 대한 설명은 바이어 04 레버쿠젠 축구 유한회사의 변호사인 크리스티네 베른하르트의 2013년 9월 11일자의 정보안내에 바탕을 둔다.

있다(자세히 아래에서). 또한 주목할 것은 동 계약서가 경기조작 및 그에 대한 시도에 대한 사후보고의무에 대한 합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반도핑에 대한 합의가 계약서안에 포함되어 있다.

엘리트 스포츠 학교에는 총 662명의 자격을 갖춘 스포츠 교사와 A급 라이선스 코치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동 학교 각각에 대해 평균 16명의 자격을 갖춘 스포츠 교사와 A급 라이선스 코치가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약 2 / 3는 풀타임인력이고, 75명은 국가 코치이며, 95명은 올림픽 훈련 센터 코치이다.) 학생들은 이들로부터 일년에 300.000 시간 이상 동안 특별 교육을 받는다. 스포츠기숙학교에서는 약 200명의 교육자들이 일년에 약 45만 시간 동안 학생들을 담당하여 돌보아야 한다.<sup>18)</sup>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독일올림픽팀들간의 비교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엘리트학교 모델이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참가자의 26.6%가 스포츠엘리트학교 출신이고, 메달리스트의 34.9 %가 스포츠 엘리트 학교 출신이었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독일참가자의 53.6%가 동학교 출신이었고, 그 메달 성과율은 83.7%였다.<sup>19)</sup>

또한 독일에 축구를 위한 엘리트학교가 29개가 존재한다는 것에 아주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sup>20)</sup>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RW)지역에서는 11개 NRW - 스포츠학교가 함께하는 “스포츠 협력 학교”라는 개념이 현실화 되었다. 동 학교는 스포츠 측면에서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남녀학생들을 경쟁 스포츠에 종사하는 클럽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10세에서 12세 학생들은 주당 5시간씩 의무적으로 체육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폭넓고 강도 높은 기본교육 또한 마련되어 있다.

독일 스포츠후원재단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스포츠후원 선서”가 정하고 있는 윤리적 요구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동 선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독일의 스포츠 지원 재단이 어떤 공공 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 재단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민의 이니셔티브이다.

나는 독일 스포츠 지원재단의 지원을 받는 엘리트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조력과 지원을 통해 스포츠와 독일 스포츠 후원재단의 현재와 미래를

18) Siehe oben Fn. 16.

19) Vgl. zu der Statistik oben Fn. 16.

20) Nähere Informationen unter <http://talente.dfb.de/index.php?id=519149> (letzter Abruf am 20.11.2013).

보장하는 일에 직접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나는 독일 스포츠후원 재단의 원칙 ‘성과, 공정경쟁, 공존과 이상을 나의 것으로 여길 것을 선언한다. 나는 스포츠 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나의 행동과 태도를 동 재단의 원칙에 따라 행할 것을 약속한다.

독일 스포츠후원 재단의 지원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동 재단이 나를 탈퇴시킬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특히, 내가 NADA의 도핑규정이나 해당 국가 또는 국제협회의 도핑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독일 스포츠후원 재단의 후원금 상환청구 권한을 인정한다. 독일 스포츠후원재단은 최대 2년까지의 지원금을 상환 요청할 수 있다.

나는 상기의 선서를 자발적으로 행한다. 나는 스포츠 행사나 미디어 출연 시 운동복이나 레저용 의복에 가능한 한 모두, 스포츠지원재단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독일 스포츠후원재단의 원칙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할 것이다.”

## 나. 대학스포츠

독일의 모든 대학은 대체로 광범위한 스포츠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이다. 소위 제 3 제국에서는 이와 달랐다. 제3제국이라고 불리는 히틀러 집권시절에는 대학스포츠가 의무였고, 이에 불참 시 학교로부터 제적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sup>21)</sup> 학생 중 누구든 시험에 출전할 만큼 수준 높은 스포츠를 구사할 경우, 독일 대학 선수권 대회인 35가지 스포츠 종류 대회에 참여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동 대회는 독일 대학 스포츠 연맹 (ADH: Allgemeiner Deutscher Hochschulsportverband)에 의해 구성된다. 동 대회는 여러 대학도시에서 다양하게 개최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유니버시아드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주정부가 엘리트선수들이 경쟁스포츠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시간투자와 학과 공부와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대학규정을 만들어 주는 데에 있다. 실제로 독일의 대학들은 이와 부합해서 학생들이 그들의 시험일정을 특별히 조정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학과공부를 개인적으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톱 엘리트선수들은 스포츠와 학과전공을 동시에 이루어 “이중경력 (duale Karriere)”을 겸비하게 되고, 이로써 스포츠 이외의 미래직업

21) Hierzu Vieweg (Fn. 4), S. 248 f.

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몇 년 전(1999,) 우리 에어랑엔(Erlangen)대학도 엘리트선수들의 이중경력 (duale Karriere)의 획득을 최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독일 대학 스포츠 연맹 (ADH)과 독일육상연맹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구상은 이제 유럽 위원회에서도 주창되고 있다.<sup>22)</sup> 비록 EU는 스포츠의 분야에 있어서 그 권한이 아직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과의 협력으로 이중경력(duale Karriere)을 위한 지침<sup>23)</sup>을 이미 발표했고, 2008년에는 동 테마와 관련한 대 연구<sup>24)</sup>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공표했다.

독일에서는 대학스포츠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프로 리그를 위한 저수탱크 역할을 하는 미국대학스포츠와 구분되는 점이다. 특별한 윤리적 의무도 주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대학운동선수가 독일의 스포츠 후원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들은 “스포츠 후원 선서”가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sup>25)</sup>

#### 4. 책임

이제 스포츠 분야의 특수한 문제로서 대체적으로 운동선수, 단체, 협회, 행사 주관자, 체육관 소유주, 관객 등 다양한 관계가 얽혀있는 책임문제<sup>26)</sup>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일반 책임원칙을 다룬 후, 그 다음으로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책임면제 특권(Haftungsprivilegierung)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 가. 선수의 책임

지난 수십 년간 특히 동료선수의 부상과 관련하여 여러 번 법정에서 다투어 졌다.<sup>27)</sup>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쟁의 초점은 선수들의 주의의무(Sorgfaltspflicht) 범위에 관한 것이다. 독일민법 제 276조 제 1항 제 1호(§ 276 Abs. 1 S. 1 BGB: 과실

22) “EU는 스포츠 분야에서 소위 "소프트 컴페텐즈 (임의적 권한)"를 갖는다. (Art. 165 AEUV)

23) Die Richtlinien sind verfügbar unter <http://ec.europa.eu/sport/library/documents/c3/dual-career-guidelines-final.pdf> (letzter Abruf 06.11.2013).

24) Die Studie ist abrufbar unter [http://ec.europa.eu/sport/news/20080709-study-on-the-training\\_en.htm](http://ec.europa.eu/sport/news/20080709-study-on-the-training_en.htm) (letzter Abruf am 06.11.2013).

25) Siehe oben II. 1. am Ende.

26) 책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저자의 문헌을 바탕으로 한다: Haftungsrecht, in: Nolte/Horst (Hrsg.), Handbuch Sportrecht, Schöndorf 2009, S. 121 (128 ff.); Unfallrisiken im Sport und Versicherung, in: Bork/Hoeren/Pohlmann (Hrsg.), Recht und Risiko - Festschrift für Helmut Kollhoser zum 70. Geburtstag, Band I Versicherungsrecht, Karlsruhe 2004, S. 377 (380 ff.).

27) Vgl. nur BGH VersR 1957, 290 ff.; später BGHZ 63, 140 ff. = NJW 1975, 109 ff.; BGHZ 154, 316 ff. = NJW 2003, 2018 ff.

의 형태에 따른 책임)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주의기준의 잣대는 스포츠와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책임부담위험은 격렬한 스포츠인 경우 처음부터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하는 시합규정을 준수할 경우, 발생할 모든 사고에 대해 사고의 원인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고민들이 운동규율과 경기주의기준을 변화시킨다.<sup>28)</sup> 이러한 운동선수에 대한 책임의 제한은 해당 시합규정의 준수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합특성상의 가벼운 규칙위반, 경기상 이해 가능한 과잉행위, 단순한 오판, 경기에 따른 과로 등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단지 동료선수의 부상에 대한 책임제한에 대한 교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과실기준제한 외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정당한 승낙이 인정된다.<sup>29)</sup> 그러나 연방대법원(BGH)은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통상적인 “인위적인 가정”이라 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책임제한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자동차경주와 같은 매우 위험한 스포츠의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sup>30)</sup>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자가위험부담행위<sup>31)</sup>와 손해배상청구주장<sup>32)</sup>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Treuwidrigkeit)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운동선수들은 그 행해진 가혹함의 정도가 공정성의 경계를 넘었을 때에 한해서 서로간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sup>33)</sup> 이와 같은 책임은 심각한(grob) 규정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이러한 심각한(grob) 규정위반이라고 볼지에 대해서는 일반화시켜서 규정할 수 없고, 각각의 스포츠종류에 따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미식축구<sup>34)</sup>나 권투(상대가 있는 스포츠 종류)와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의 경우(개인 스포츠 종류)와는 달리 당연히 다른 주의의무가 주어지게 된다.<sup>35)</sup> 이러한 원칙들은 연방대법원의 자동차경주에 대한 판결<sup>36)</sup> 이래로 신체접촉스포츠종류(Kontaktsportart: 권투,

28) Vgl. Scheffen, NJW 1990, 2658, 2659.

29) BGHZ 154, 316, 324 f.; OLG Karlsruhe NJW-RR 2004, 1257 ff.; AG Düsseldorf SpuRt 2007, 38; Günther, SpuRt 2008, 57, 58; Palandt-Sprau, BGB, 67. Aufl. 2008, § 823 Rdnr. 217. A.A. in Bezug auf Segelregatten Müller-Stoy, VersR 2005, 1457 ff.; Behrens/Rühle, NJW 2007, 2079 ff.

30) Vgl. BGH NJW 1975, 109, 110.

31) Gedanke des § 254 BGB; vgl. Nipperdey, NJW 1957, 1777, 1779; Stoll, S. 260 ff.; Deutsch, VersR 1974, 1045, 1048 ff.; Pichler, SpuRt 1997, 7, 9.

32) BGHZ 34, 355, 363; BGH NJW 1975, 109, 110.

33) Vgl. AG Düsseldorf SpuRt 2007, 38 f.; OLG Hamm SpuRt 2006, 38 f.; LG Freiburg SpuRt 2006, 39 f.; OLG Hamburg SpuRt 2006, 41 f.

34) Vgl. hierzu KG SpuRt 2008, 76

35) Vgl. zur differenzierten Haftung Heermann, Haftung im Sport, Stuttgart 2008, S. 107 ff.

축구, 레슬링, 핸드볼 등)와 신체비접촉스포츠(Parallelsportart: 골프, 수영, 테니스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국 선수가 시합규정을 준수하던 혹은 아주 작은 규정을 위반하던 간에, 경기의 종류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거나 혹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수반된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sup>37)</sup>

이제 스포츠 분야의 특수한 문제로서 대체적으로 운동선수, 단체, 협회, 행사 주관자, 체육관 소유주, 관객 등 다양한 관계가 얽혀있는 책임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일반 책임원칙을 다룬 후, 그 다음으로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책임면제 특권(Haftungsprivilegierung)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이러한 것들을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교의적 근거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 지와는 무관하게, 선수들의 경기참여는 경기규칙 준수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위험감수를 의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 시, 정당한 “공탈취전”에서 발생하는 부상은 결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의 한 판결에 따르면 경기특성상 위험이 내포된 상황에서 낮은 수위의 규칙위반에서 파생되는 부상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sup>38)</sup> 또한 판례에 따르면 “경기 중 과도하지만 수용 가능한 가혹한 행위와 허용될 수 없는 부당행위 사이에 있는 불분명한 행위”<sup>39)</sup> 역시 피해보상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동료 운동선수의 행위가 분명히 심각한 규정위반인 경우에는 더 이상 경기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sup>40)</sup> 또한 측면에서 시행되는 파울(Blutgrätsche)의 경우, 즉 수비선수가 축구공보다 상대선수를 먼저 공격하는 위험한 슬라이딩 태클의 경우는 부상자의 건강상의 피해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스포츠정신 위배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르면 부상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가선수들이 서로에 대한 피해보상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어떤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험부재의 경우, 책임배제의 근거는 경기 중 피해자가 특수한 위험을 감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책임부담위험이 부당하게 요구될 때 발생한다.<sup>41)</sup> 만약 가해자가 이에 상응하는 보험

36) BGHZ 154, 316 ff. = NJW 2003, 2018 ff. = SpuRt 2004, 260 ff.

37) Hierzu Behrens/Rühle, NJW 2007, 2079, 2080.

38) BGHZ 154, 316; OLG Oldenburg VersR 1995, 670; OLG Karlsruhe NJW-RR 2004, 1257; OLG Hamm, NJW-RR 2005, 1477.

39) OLG Hamm, NJW-RR 2005, 1477.

40) OLG Hamm VersR 1999, 1115; OLG Stuttgart NJW-RR 2000, 1043.

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책임위험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그 밖에 생각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의 협회, 행사주최자, 후원자 등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례들을 잠깐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sup>42)</sup> 보험법상 피해자의 종류는 월급이 100유로 이상<sup>43)</sup>으로 협회에 고용된 경우와, 그 외에 운동 실습자, 특히 여가시간에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으로 구분된다. 종속적으로 고용된 직업선수는 공제조합(VBG: *Verwaltungsberufsgenossenschaft*)에 의해서 법정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따라서 질병, 장애 또는 소득중단에 따른 위험부담은 행정직업연맹으로 이전된다. 근로능력이 상실된 첫 6주간은 협회가 고용주로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책임부담위험은 사회법전 제 7권 제 105조 제 1항(§ 105 Abs. 1 SGB VII)에 따른 협회 고용회원에게 주어지는 책임면제특권에 의해 현저히 감소된다.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여기서는 중과실을 전제로 한다.

특히 광범위한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정상해보험의 구상에 따라 보험금은 각 위험에 적합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기업으로서 협회들은 1996년 이래 3가지의 상이한 위험단계(사회법전 제7권 제 157조: § 157 SGB VII)군으로 분류되어 있다.<sup>44)</sup>

## 나. 트레이너와 체육교사의 책임

개별 스포츠수업에 있어서 운동선수에 대한 트레이너의 실책문제가 제기되면 종종 어려운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트레이너의 활동범위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스포츠수업계약(민법 제 611조에 따른 고용계약: *Dienstvertrag i.S.d. § 611 BGB*)에 근거한다면, 계약상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의무위반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민법 제 280조 제 1항: § 280 Abs. 1 BGB). 스포츠수업계약의 전형적인 내용에 따라 트레이너는 선수에게 운동기법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눈에 띄는 특수한 위험들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특히 이러한 보호의무의 위반 시 부

41) BGH NJW 2008, 1591, 1592.

42) Umfassend Heermann, Haftung im Sport, Stuttgart u. a. 2008, S. 132 ff.

43) 이행된 지불은 최대 100유로까지 비용상환으로 다루어진다.

44) 위험등급은 관련된 위험군의 위험리스크를 반영한다. 세 개의 남자축구리그협회 유급 축구선수 :2013 년 54,05; 다른 유급 남녀 축구선수: 2013 년 47.29; 또 다른 유급 남녀 축구선수 2013 년 46,84; 나머지 피보험자들 2013년부터 2,52Vgl. [http://www.vbg.de/SharedDocs/Medien-Center/DE/Faltblatt/Mitgliedschaft\\_Beitrag/Gefahrtarif\\_2011\\_Dritter\\_Nachtrag.pdf?\\_\\_blob=publicationFile&v=1](http://www.vbg.de/SharedDocs/Medien-Center/DE/Faltblatt/Mitgliedschaft_Beitrag/Gefahrtarif_2011_Dritter_Nachtrag.pdf?__blob=publicationFile&v=1); 실제 위험평가에 있어서 비교적 작은 스포츠클럽경우에 가능한 상존위험과 관련하여: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vom 13.11.2013, S. 24.

상당한 선수로부터 계약상의 피해보상요구가 청구될 수 있다. 물론 불법행위(민법 823조 이하:§§ 823 ff. BGB)에 의해서도 개별적으로 트레이너에게 피해보상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 이는 규정상 트레이너의 거래안전의무 위반이 증명될 수 있을 경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거의 한 번도 발생한 경험이 없다.<sup>45)</sup> 법원은 스포츠 트레이너가 어떤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개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위험의 종류와 정도, 피해발생의 인식가능성 또는 예측가능성, 위험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수업을 받는 운동선수의 나이와 훈련상황 등을 고려한다. 그 외에도 트레이너의 거래안전의무의 구체화를 위해 운동하는 장소와 기계에 대한 안전보호규칙과 특별규정(예를 들면 스키구간 교통안전에 대한 연방주법상의 규정) 및 개별 상해보험조합의 사고방지 규정 등을 두고 있다.

트레이너의 책임의 근거로는 첫째 트레이너의 지시가 없었거나, 틀렸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경우에 따라 트레이너가 자신의 학생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잘못된 반응을 미리 계산하지 못했거나 잘못 판단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보험법적인 측면으로는 고용된 직업운동선수와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sup>46)</sup>

보험법상 단체에 종속돼 있는 직업선수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 트레이너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공공학교의 체육교사의 책임도 민법상의 책임이다. 공공학교의 체육교사도 트레이너의 거래안전의무와 동일한, 맡은 학생에 대해 광범위한 배려 및 보호의무를 진다.<sup>47)</sup>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적인 근거가 부재하므로 독일민법 제 280조 제 1항에 따른 책임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범위 내에서는 직무책임에 대한 특수규정(독일헌법 제 34조와 연계하여 독일민법 제839조 참조:§ 839 BGB i.V.m. Art. 34 GG)과 사회법전 제 7권(SGB VII)의 사회보장법상의 특수규정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1년 법정상해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률상황이 크게 변했다. 예전에는 법원이 피해학생에게 공무원의 책임에 기인하여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의 책임 있는 의무위반을 인정해야만 했었지만, 법정상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절차는 더 이상 필요 없게

45) Vgl. nur den kurzen Überblick bei Fritzweiler, in: Fritzweiler/Pfister/Summerer (Hrsg.), Praxishandbuch Sportrecht, 2. Auflage, München 2007, V Rn. 96; Dury, Haftung des Trainers, in : Dury (Hrsg.), Der Trainer und das Recht, Stuttgart u. a. 1997, S. 9 (25 ff).

46) Vgl. OLG Köln VersR 1983, 929; OLG Celle NJW-RR 2000, 559.

47) Zur Kasuistik vgl. wiederum Fritzweiler (Fn. 45), V Rn. 112 ff.

되었다. 이제 체육교사의 책임은 보험회사가 교사에게 책임 상환청구를 할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체육교사에 대한 상환청구는 현행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예전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971년의 법정상해보험제도 도입 이전의 판결은 교사의 책임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교사들은 국가에 의한 교육위임과 공공법적인 보호배려의무에 따라 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의해야 한다.<sup>48)</sup>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에 맞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체육교사들은 최우선적으로 예방조치(지시/가르침/보조도구 사용 등)에 대한 의무를 진다.<sup>49)</sup>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시사항준수여부를 계속적으로 감독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의 발생여부에 대해 관찰할 의무를 진다.<sup>50)</sup> 이 과정에서 중목별 사고위험이 크면 클수록 교사의 보호의무기준도 높아진다. 각기 이행해야 할 보호의무의 종류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개별상황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학생의 나이, 숙련 정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천, 지역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체육교사가 전혀 감독하지 않고 그 감독을 학생에게 위임하는 것은,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고 해도, 고학년 학생들에게만 허용된다. 만약 예를 들어 부상당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교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었다거나,<sup>51)</sup> 사고가 부상자의 위험영역에서 기인될 수 밖에 없었다면,<sup>52)</sup> 이는 거래안전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학생들의 신체적 상해와 관련하여 1971년이래, 학교에서 행사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법정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법전 제 7권 제 2조 제 1항 제 8호: § 2 Abs. 1 Nr. 8 SGB VII).<sup>53)</sup> 그러므로 학교측의 책임은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예: 물질적인 손해의 경우). 이러한 광범위한 책임면제특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의 개인적인 책임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해보험회사(사회법전 제 7권 제 110조: § 110 SGB VII)나 학교측 (기본법 제 34조 제 2항, 공무원법한계법(BRRG) 제 46조 제 1항 제 1호, 연방공무원법(BBG) 제 78조 제 1항 제 1호: Art. 34 S. 2 GG, § 46 Abs. 1 S. 1 BRRG,

48) BGH VersR 1958, 232.

49) Vgl. bereits BGHZ 13, 25, 26; BGH NJW 1969, 554, 555.

50) BGH VersR 1962, 825; OLG Düsseldorf NJW 1963, 2277.

51) BGH NJW 1967, 621; OLG Düsseldorf VersR 1965, 1179.

52) BGH NJW 1963, 1828.

53) Grundlegend BGHZ 46, 327, 331; OLG Celle 1974, 747.

§ 78 Abs. 1 S. 1 BBG) 모두 교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했을 경우는 동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적인 상식상 가해자가 필요한 주의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행하지 않았고 실제상황에서 어떤 누구라도 인지했을 정도의 사실을 간과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단지 가벼운 -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 과실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교사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계약상의 책임 또한 배제된다. 관리대상인 학생(또는 그의 부모)에 대한 유일한 계약당사자는 학교이다. 체육교사 역시 계약상으로 고용주와 연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간의 수평적인 계약상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 5. 요약

1. 독일의 스포츠 조직은 피라미드 및 독점적 구조로 특징지어진다. 스포츠단체의 설립의 자유는 결사. 동맹의 자유에 대한 조항인 독일헌법 제 9조에 의해 보장된다. 국가의 지원도 독일연방구조에 상응하게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으로 각각 구분되어 행해진다. 스포츠의 프로화, 상업화, 대중매체화의 정도는 다양한 운동종목에서 다양하게 발달되어있다.

2.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기 때문에 학교 및 대학스포츠에 대한 사안은 연방주의 권한에 속한다.

3. 학교스포츠는 국민들의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역량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쟁스포츠의 경우는 특화된 학교와 경기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독일 스포츠후원재단에 의해 후원을 받는 장학생들에게는 윤리적 기준원칙이 적용된다 (Sporthilfe-Eid: 스포츠후원-선서).

4. 독일의 대학스포츠는 프로화 되어있지 않다. 대학스포츠는 독일 스포츠연맹들에 의해 지원되는 스포츠나 연방군과 연방경찰에 의한 우수육상선수 지원프로그램 등과 비교할 때 부차적인 조역을 하는데 불과하다. 반가운 일은 스포츠협회들과 계약을 체결한 일부 대학을 통해 이중경력(duale Karriere)시스템이 지원되는 것이다.

5. 운동선수, 트레이너, 학교 및 대학의 체육교원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일반 책임

법에 따른다.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특이한 점은 의무화된 법정상해보험에 관한 것과 학교나 대학의 평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책임부담을 고의로 경우로만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주 제 어	독일의 스포츠 조직(Organisation des Sports in Deutschland), 학교 스포츠(Schulsport), 스포츠 엘리트학교(Eliteschule des Sports), 스포츠후원-선서(Sporthilfe-Eid), 대학 스포츠(Universitaetsport), 이중경력(Duale Karriere), 운동선수, 트레이너, 체육교원의 책임(Haftung der Sportler, Trainer und Sportlehrer), 법정상해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

투고일 2014. 1.31 / 심사(수정)일 2014. 2.19 / 게재확정일 2014. 2.24.